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11. 5(화) / 총 3매(본문3)
담당 부서	건설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주종완, 사무관 이기림 • ☎ (044) 201-4597
보 도 일 시		2019년 11월 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1.5(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지자체와 함께 건설산업을 혁신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일 전국 17곳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서 정책 공유, 현장이행 강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5일(화)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추락사고 등 장기간 누적되어 온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개선대책('17.12),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추락사고 방지대책('19.4) 등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 발표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협의회는 대책을 직접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 제1차 협의회('19.5.20) : 건설사고 저감방안 논의, 임금직불제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공유, 위법행위 단속·처벌률 제고방안 논의 등
-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참고)들을 공유하고, 나아가 ①안전, ②일자리, ③위법행위 점검 분야의 주요 추진상황들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 안전관련 정책들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파 및 협조를 당부하였다.

- 또한, 노후 SOC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

② 또한,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 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편법 등에도 국토부와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20년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전자카드제**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근로자 경력관리, 인력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

③ 나아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 지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체불발생 시 시정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당부했다.

* 매년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등 등록기준 조사(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오늘 회의가 그간 국토부에서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 “건설정책의 현장 이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지속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구상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이기림 사무관(☎ 044-201-45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영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22호의6 서식)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폐이퍼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액 50억 미만 공사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
 - 직접 시공 비율 산정기준을 총 공사비 기준에서 총 노무비 기준으로 변경(’19.7.1.시행)

(행정처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 ②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영 제34조제1항제2호)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 금액이 60%를 미달하는 공사에서 64%로 확대
 -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도급금액의 82%,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도급사에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등 지시

(행정처분) 발주자에게 통보되는 하도급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원) 처분

- ③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영 제35조제3항)
 -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는 3개 현장,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2개 현장까지 중복배치 허용

(행정처분)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2개월), 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④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영 제34조제9항)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미사용 시 처벌규정* 마련

(행정처분) 1차 : 영업정지 2개월(과징금 4천만원),

2차 : 영업정지 3개월(과징금 6천만원)

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영 제64조의4)

- 타워크레인 대여금액이 수급인 도급금액의 82% 또는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행정처분) 대여금액이 도급금액 대비 82%, 예정가격 대비 64%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 적정성을 심사하여 대여계약내용의 변경 등 지시

⑥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규칙 제34조의5, 별지 제26호의4 서식)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시 건설업자는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시에는 계약서 사본, 보증서 면제 증빙서류 첨부

(행정처분) 발주자에게 통보(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되는 대여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원) 처분

⑦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법 제68조의3, 별지 제26호의3 서식)

-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 보증에서 공사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

- 원도급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하도급 공사는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개별 보증 가능

(행정처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4,000만원) 처분